

일본의 수산금융 시스템에 관한 연구

송 정 현*

A Study on Fisheries Financial Systems in Japan

Song, Jung-Hun

目	次
I. 서론	IV. 제도금융
1. 연구의 배경	1. 제도금융의 개요
II. 수산업과 수산금융	2. 농림어업금융공고
1. 수산금융의 특징	3. 어업근대화자금
2. 수산금융의 구조	V. 수산금융관련보완조치제도
III. 어협계통금융	1. 중소어업용사보증제도
1. 어협계통금융의 구조	2.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제도
2. 어협	3. 전국어협신용사업상호원조제도
3. 신어련	VI. 결론
4. 농림중금	참고문헌 및 자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일본의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¹⁾, 일본식 금융 빅뱅²⁾의 진전 등의 금융정세의 변화에 의해 「자기책임경영」의 확립에 의거한 「경영의 진전성 확보」가 요구됨과 동시에 금융서비스

* 日本 농촌금융연구소 연구원

1)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의 다양화와 경쟁의 격화로 도태·재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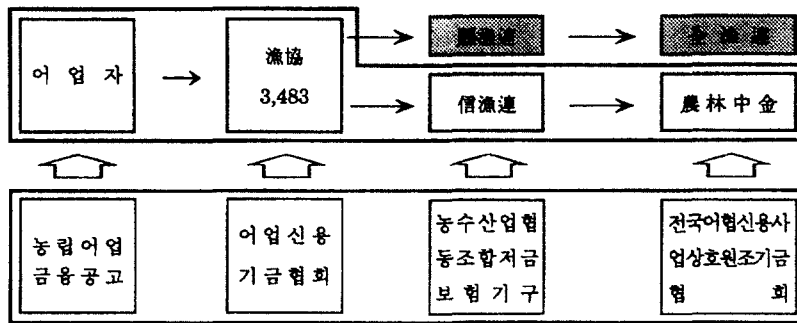
특히 2002년 4월부터 예금자보호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저금자 등 이용자로부터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재무내용 및 경영자세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대형금융기관은 전면적인 구조재편 과정 하에 있으며, 협동조합금융기관은 새롭게 「지역 밀착형 노선」을 추진하는 등 각각이 독자적인 전략을 통하여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인터넷 뱅킹, 전자화폐 등의 출현과, 규제완화로 인해 타 업종의 금융업무 취급 등 금융서비스는 질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수산금융의 중심을 이루는 어협 계통조직은 다른 금융기관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어협 계통조직이 어촌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는가가 당면 과제이다. 어협 계통조직의 경영건전성 확보, 자기책임경영에 기초한 건전한 사업체제의 구축이 급선무인 현시점에서, 어협 계통신용 사업의 근본적인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본의 수산금융을 둘러싼 상황 인식 하에서, 일본 수산금융의 구조분석과 현 단계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중요과제로 한다(<그림 1>참조).



<그림 1> 수산금융 조직도

Ⅱ. 수산업과 수산금융

1. 수산금융의 특징

수산업은 가계와 경영이 미 분리된 연안 어업경영과 기업적 색채가 강한 원양·근해 어업경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농업 등 다른 1차 산업과 같이 자연조건에 좌우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수산금융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수산업은 경영이 불안정하고, 수익성이 낮으며, 담보가 미비하므로 민간 금융기관이 용자대

2) 1986년 10월 영국 정부는 런던증권시장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자 은행·증권업의 겸업 허용, 증권매매 수수료를 자유화 등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획기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시의 조치가 우주 대폭발과 같이 획기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를 빅뱅이라 부른다. 일본판 금융빅뱅은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보험 등을 포함한다.

상으로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둘째, 소액자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높은 금융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금융기관과의 역학 관계에서 약한 입장에 처해있다. 넷째, 공동투자(예를 들면 냉장시설, 창고, 출하시설 등)가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은 장기간의 투자회수기간을 요한다. 이로 인해 수산금융은 장기·저리이고 수산업자 등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집단을 용자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금융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자금수급의 계절성과 지역적인 과부족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수산금융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협계통 등의 전문 금융기관(농림중앙금고-이하 농림중앙금고, 신용사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신어련-, 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과 장기·저리의 제도금융자금(농림어업금융공고-이하 농림공고-, 어업근대화자금, 기타의 제도자금)등이 설치되어 수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수산 관련산업은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으로 경영기반의 취약성, 생산의 후진성, 담보력의 미비 등으로 금융기관과의 역학 관계와 자금 조달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전문의 금융기관과 제도금융에 의한 용자가 실시되고 있다.

2. 수산금융의 구조

일본의 수산금융은 ① 정부·현 등의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용자되는 것, ② 정부·어가 등의 저금을 재원으로 어협계통 금융기관에 의해 용자되는 것, ③ 일반 예금자 등의 예금을 재원으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에 의해 용자되는 것의 세 가지 흐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현 등의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한 것은 ① 우체국 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을 차입하여 농림공고 등에 의해 용자되는 것, ② 정부·현 등의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都道府縣의 특별회계에 의해 용자되는 것, ③ 정부·현 등의 재정자금과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을 더하여 이들을 재원으로 용자되는 것, ④ 어협계통 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것으로 정부·지방공공단체 등이 利子補填과 채무보증을 실시하는 금융이 있다. 일본에서는 이들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일련의 금융을 총칭해서 제도금융(또는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어협 계통 금융기관의 수산관계자금 흐름은 市町村단계의 어협→都道府縣 단계의 신어련→중앙단계의 농림중앙금고의 3단계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조직에 의한 용자는 정부·현 등에서 利子補填을 받아 용자하는 어업근대화 자금, 天災자금 등과 어협이 스스로 판단해서 용자하는 어협 자체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산업금융에 대해서는 보통은행(도시은행, 지방은행)및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의 민간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 의한 용자가 주류가 되고 있다.

<표1>은 금융기관별 수산관계의 용자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3월말의 수산업에 대한 어협계통조직의 용자를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서 2조 2,225억 엔이 대출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조합계통 금융기관이 60%, 민간 금융기관이 30%, 농림어업금융공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경영론집

<표 1> 수산업에 대한 금융기관별 대출금 잔고

단위 : 억엔

	65.3	70.3	75.3	80.3	85.3	90.3	95.3	00.3
민간금융기관 (지방금융)	2,087 620	3,158 1,137	4,787 1,674	7,185 2,659	8,952 3,740	9,085 4,257	9,859 4,316	6,776 3,159
조합금융기관	1,449	3,268	8,626	13,343	14,868	13,545	14,080	13,831
農林中金	930	1,731	3,754	4,232	4,533	3,631	3,430	2,959
信漁連	400	1,168	3,473	7,049	8,010	7,708	7,126	8,293
漁協	119	369	1,399	2,062	2,325	2,206	3,532	2,079
정부계 금융기관 (농림공고)	503 475	906 808	2,014 1,830	4,230 3,962	5,231 4,965	4,960 4,786	3,570 3,411	2,118 1,709
합계	4,039	7,332	15,427	24,731	29,051	27,590	27,517	22,225
민간금융기관 (지방은행)	51.7 15.4	43.1 15.5	31.0 10.9	29.1 10.8	30.8 12.9	32.9 15.4	35.8 15.7	30.5 14.2
조합금융기관	35.9	44.6	55.9	54.0	51.2	49.1	51.2	60.0
農林中金	23.0	23.6	24.3	17.1	15.6	13.2	12.5	13.3
信漁連	9.9	15.9	22.5	28.5	27.6	27.9	25.9	37.3
漁協	2.9	5.0	9.1	8.3	8.0	8.0	12.8	9.4
정부계 금융기관 (농림공고)	12.5 1.8	12.4 11.0	13.1 11.9	17.0 16.0	18.0 17.1	18.0 17.3	13.0 12.4	9.5 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農林中金 「업무통계연보」, 오키나와진흥 개발금융공고 「업무통계연보」

주 : 하단은 합계를 100으로 한 금융기관별 구성비이다.

이들 금융기관별 년차별 추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1970년 이전에는 민간금융기관이 50%전후의 추이를 보여 어업에 대한 대출은 민간금융 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 1·2차 오일쇼크, 200헤리 체제에 돌입한 1970년 이후에는 민간금융기관의 비중이 30%전후로 감소하고 장기저리 자금인 정부계 금융기관의 비중이 18%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원유수입가격의 상승, 해외어장의 축소에 의한 중소어업의 규모확대, 자본장비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긴급유자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수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잔고가 1985년도에 2조 9,051억엔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1990년대부터는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계 금융기관의 비중이 저하하고 조합계통 금융기관의 비중이 60%에 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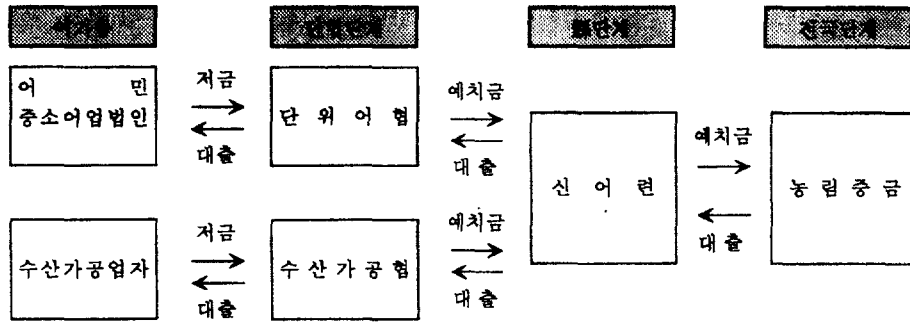
최근 어업자의 자금 차입처로서 어업계통 금융기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금융의 특징으로 인해 어업자는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이며, 제도자금이 장기저리의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업경영의 환경이 매우 어려워 졌기 때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Ⅲ. 어업계통금융

1. 어업계통금융의 구조

어업계통금융이란 어업계통조직이 뒷받침해주는 시스템 금융을 말한다. 즉 市町村단계의 각각 독립된 경영체인 개개의 어협, 縣단계의 신어련, 全國단계의 농림증금으로 구성되는 3단계에서 각각

일본의 수산금융 시스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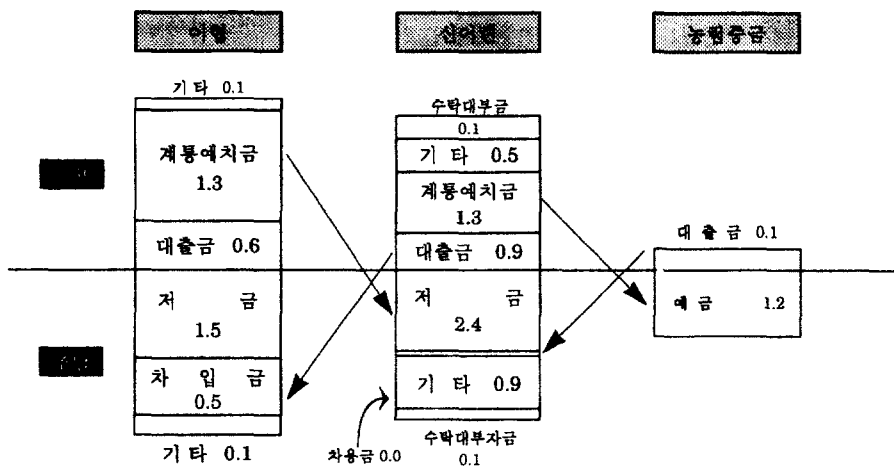
<그림 2> 어협계통금융의 흐름

기능을 분담해서 조직적·계통적인 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어협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의 지역 내에서 조합원 등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신용사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구매·판매 등의 경영사업도 실시하는 한편, 겸업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상호간에 보완함으로써 각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협은 조합원 등으로부터의 저금을 재원으로 조합원 등에게 대출하고, 남은 자금의 일부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 자주적으로 신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유자금의 대부분은 신어련에 예치해두고 있으며 지불준비의 관점에서 도 계통예치금이 의무화 되어있다.

신어련은 어협으로부터 예치된 저금 등을 재원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縣내의 어협에 대해 대출을 실시하는 등 縣내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 신어련은 지방공공단체와 縣연합회 등에도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출을 실시하고 남은 자금은 농림중금에 예치한다.

농림중금은 어협 계통금융기관을 종합하는 중앙금융기관으로서 업종·지역·계절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의 편중 등에 대한 전국적 조정을 실시하는 외에 관련산업과 지방공공단체에 대출을 하고 있다. 여유자금은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그림 2>참조).



<그림 3> 어협계통조직의 자금개황 (2000년 3월말 현재) 단위 : 조엔

<그림 3>은 전술한 어협 계통 3단계의 자금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3월 말 현재, 어협의 자금 조달은 1.5조엔(신어련에의 양도분을 제외)의 저금과 0.5조엔의 신용사업차입금(이 중 농림공고 자금은 217억엔)과 기타 금액을 포함하여 약 2조엔이다. 한편 0.6조엔의 대출(이 중 농림공고자금은 226억엔)을 하고 남은 여유금 1.3조엔을 신어련 등에 예치하고 있다.

신어련은 주로 어협으로부터 모아들인 저금 2.4조엔과 기타를 포함한 2.7조엔을 재원으로 0.9조엔을 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유가증권(0.2조엔)의 형태로 운용하며, 어협과 마찬가지로 농림증금에 1.3조엔을 예치하고 있다.

농림증금에서는 주로 신어련에서 조달받은 1.3조엔의 자금가운데 0.1조엔을 대출(주로 신어련을 대상)하고 1.2조엔을 예금으로 하고 있다.

<표2>는 이상의 어협계통 3단계의 자금 구성을 연차적으로 본 것이다. 대출금의 비중을 보면 어협과 농림증금의 비중이 1985년을 정점으로 저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어련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어협계통 3단계의 어업관계 예저금과 대출금

단위 : 억엔, %

		70.3	75.3	80.3	85.3	90.3	95.3	00.3
예 저 금	漁 協	2,236	5,858	12,363	16,260	20,414	20,452	14,800
	信 漁 連	1,810	5,014	11,247	15,650	20,430	22,250	23,910
	農 林 中 金	609	1,527	4,075	6,436	7,256	11,697	11,995
대 출 금	漁 協	2,105	5,566	9,405	11,178	9,561	8,396	5,632
	信 漁 連	1,330	4,220	7,435	8,396	7,777	7,379	8,663
	農 林 中 金	1,601	3,345	3,717	3,862	2,357	2,075	1,877
저 대 율	漁 協	94.1	95.0	76.1	68.7	46.8	41.1	38.1
	信 漁 連	73.5	84.2	66.1	53.6	38.1	33.2	36.2
	農 林 中 金	262.9	219.1	91.2	60.0	32.5	17.7	15.6

資料 : 農林中金, 漁協과 信漁連의 殘高試算表

주 : 1. 農林中金은 수산관계 만이다.

2. 저대율 = 대출금 / 예저금 × 100

2. 어협

1) 어협신용사업의 연혁과 어협조직

1948년에 민주화를 기반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성립되어 현재의 어업협동조합, 縣연합회(縣어련·신어련), 전국련(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 구성되어 있지만 전시통제에서 개방되어 자주적으로 많은 수의 어협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경영기반은 많은 어협계통조직을 경영위기에 처하게 하였고, 일본 정부는 1951년에 농림어업협동재건정비법을 제정해 계통 금융기관의 협력 하에 부진 조합과 연합회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그 외의 어협 경영 강화책으로서 1960년에 어협정비촉진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는 어협저축 전국통일 운동이 시작되어 제 1차 목표였던 5백억엔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 제 6차 목표 2조

엔을 달성하고 1998년부터 3조엔달성운동을 전개중이다.

게다가 1967년부터는 어협합병조성법이 시행되고 그 후 5차에 걸친 개정으로 1998년 3월에 어협합병조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어협합병촉진법으로서 확충·연장되었다. 그 결과 일본 연안지구의 어협 수는 1955년 3,146조합(출자 조합만)에서 2000년 3월 말에는 1,804조합으로 반수 가까이 감소하였다.

한편 처음에는 소규모였던 어협의 신용사업도 크게 성장해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반면, 어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어협의 고정채권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어협계통에서는 1975년부터 자주적으로 어협신용사업체제정비강화운동을 9년간 실시한 후, 1983년도 후반부터는 전국 어협신용사업강화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1985년도부터 어협신용사업정비강화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1992년부터 돌발적 위험이 높은 조합의 신용사업을 폐지하고 어협의 신용사업을 신어련으로의 양도에 의한 점포 통합합·인원삭감 등 철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능면에서의 구체적인 강화책으로서는 1980년도부터 어음업무 강화 확충방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협계통 신용사업 시스템화의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1987년 7월에 어협 신용사업사무 전산처리의 공동개발·이용시설인(주)전국어협온라인센터를 설립하였다.

<표 3>에서 어협의 조직상황을 보면 어협은 지역적인 결합에 의한 지구 어협과 업종별 결합에 의한 업종별 어협으로 나뉘며, 그 중 지구 어협은 연안지구 어협과 내수면 어협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어협에서는 구매·판매 등의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가량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협 외에 수산가공업자 및 수산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종업원 100명 이하)을 조합원으로 하는 수산가공협이 있고, 어협과 마찬가지로 약 50%가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3> 漁業協同組合의 組織狀況

			60.3	65.3	70.3	75.3	80.3	85.3	90.3	95.3	00.3
出資組合	地區漁業協同組合	沿海內水面	3,026	2,522	2,285	2,211	2,174	2,151	2,127	2,001	1,822
			667	671	668	701	718	733	731	729	728
	業種別漁業協同組合		290	294	286	304	299	280	248	216	188
	漁業生産組合		883	805	787	786	812	817	687	644	590
	水産加工業協同組合		228	173	192	190	195	188	175	165	155
합	計		5,904	4,465	4,218	4,192	4,198	4,169	3,968	3,755	3,483
非出資組合			348	289	260	227	217	197	190	179	172
실시사업별	신용	저금부	2,314	2,217	2,174	2,129	2,085	2,061	1,958	1,631	875
		매매									
	판구어	매매	2,229	2,159	2,076	2,039	2,009	2,030	2,003	1,863	1,702
		매매	2,170	2,082	2,083	2,047	2,103	2,123	2,101	2,013	1,844
자영		1,165	1,106	969	874	901	850	705	766	689	

자료: 全漁連「漁業協同組合統計表」

주: 1. 大臣이가와 都道府縣知事인가의 합계수임.

2. 96년 3월 말부터 단위조합의 「신용」 조합수는, 각각 잔고가 있는 조합수임.

2) 신용사업

어협의 신용사업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에 의한 어가경영과 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어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저금의 예치·자금의 대출·국내 어음거래라는 3대 금융업무 이외에, 공공채 자금운용과 지방공공단체의 지정금융기관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과 거의 같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협의 신용사업과 일반 금융기관과의 금융업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조합원 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 조합원 이용의 제한에 대해서는 조합원 이용분량의 2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둘째,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제한을 넘는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해당지구 외의 대출은 전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어협의 저금에는 당좌, 보통, 통지, 별단, 정기의 각종 저금, 정기적금 등이 있고 또 대출은 크게 나누어 제도자금용자(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그 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실시하는 장기 저리의 용자로 어협을 창구로하여 실시하는 용자)과 보통용자(특별한 우위 조건이 없는 계통의 보통자금) 및 그 가운데 위치하는 要綱용자(어협 계통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용자)가 있다.

어협은 저금과 대출 기능 외에도 어음할인, 채무보증 등을 실시하고, 또 신어련의 업무와 어업자 연금기금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그 외에 어협에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급여의 계좌이체, 공적연금 급부금의 계좌이체 취급, 구좌 대체(전화료, NHK수신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市町村의 지정 금융기관으로서 공과금의 납부, 지불사무를 실시하는 어협도 있다.

어협신용사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어협 1조합 평균 저금 잔고는 2000년 3월말 현재 17억엔(농협은 457억엔)으로 금융기관으로서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이다. 둘째, 어협에 예치된 저금을 대부분 신어련에 예금하고,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그 재원을 신어련에서 조달하는 방식인 「재예치 轉貸방식³⁾」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예치 轉貸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특정의 어업자에게 큰 자금을 빌려준다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어협 전체의 신용유지를 위해서는 예금과 대출금을 분리해 두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이다. 환언하면 어협단체에서 책임질 수 없는 리스크를 상부계통 단체에 위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조합원에 대한 대출잔고에 있어 제도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등의 특징이 있다.

〈표 4〉는 어협 신용사업의 주요 계정을 나타낸 것이다. 어협의 저금은 1965년도 말에 667억엔에 지나지 않았지만, 1990년에는 2조엔을 상회하여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2조엔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신어련으로의 신용사업 양도가 원인으로, 신어련으로의 양도분을 포함하면 약 2조엔으로 최근에는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 대출금은 1985년의 1.1조엔을 정점으로 감

3) 어협의 대출심사·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신어련이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어협은 예금을 일단 신어련에 예치하고 대출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만큼의 轉貸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이다. 즉 신어련의 창구기관으로서 어협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금융 시스템에 관한 연구

<표 4> 漁協信用事業의 주요 계정

단위 : 억엔, %

		65.3	70.3	75.3	80.3	85.3	90.3	95.3	00.3
調	預金(A)	667	2,236	5,858	12,363	16,260	20,414	20,452	14,800
	當座性	305	1,086	2,458	4,481	5,073	5,855	4,904	5,261
	定期性	362	1,150	3,400	7,882	11,187	14,559	15,548	9,540
達	借入金 (農林公庫轉貸分)	672	1,735	4,162	7,339	8,832	7,325	5,379	3,543
	기타	109	269	500	956	1,304	891	661	217
調達 / 運用共通計		57	3	370	405	999	1,535	1,135	1,173
調達 / 運用共通計		1,396	3,974	10,390	20,107	26,901	29,274	26,966	19,516
運	出資金(B)	797	2,105	5,566	9,405	11,178	9,561	8,396	5,632
	短期	326	910	2,132	3,065	3,970	3,709	3,538	2,446
	長期	471	1,195	3,434	6,340	7,208	5,832	4,858	3,186
	(農林公庫資金) (漁業近代化資金)	672	220	506	960	1,325	921	673	226
	-	199	1,281	2,443	1,942	1,927	1,699	1,172	
用	余裕金(C)	559	1,765	4,466	10,236	14,145	18,990	18,032	13,627
	系統預置金(D)	449	1,533	3,991	9,444	13,085	17,351	16,138	12,542
	系統外預置金	77	143	328	516	740	1,368	1,608	858
	유가증권	33	89	147	276	320	271	286	227
	기타	40	104	358	466	768	723	538	257
貯貸率(B)/(A)		119.5	94.1	95.0	76.1	68.7	46.8	41.1	38.1
系統利用率(D)/(C)		80.3	86.9	89.4	92.3	92.5	91.4	89.5	92.0

자료 : 農林中金「漁協殘高試算表」

소경향인데 이는 농림공고 자금과 어업근대화자금인 제도자금의 감소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저금의 증가와 자금수요의 감소에 의한 대출금의 감소는 貯貸率(저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1965년에는 저대율이 119.5%로 오버론(over loan)-대출의 비율이 큼-이었지만 2000년에는 저축의 증가에 비해 대출금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로 감소하였다. 한편 저대율의 감소는 여유금 증가를 유발하여, 1980년에는 계통예치금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등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표 5>에서는 어협의 저대율이 감소한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어협에서 조합원의 근간이 되는 어가(동력어선 10톤 미만, 소형정치망, 저인망 한정)의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연안어업 취업자는 1965년 47만명에서 1999년 2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粗收益에서 경비등을 차감한 연안어선어가의 어업소득은 1990년의 259만엔까지 순조롭게 성장하였지만 그 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어업외의 소득이 1985년부터 어업소득을 상회하고 연안어선어가의 어업의존도는 매년 감소하여 1999년에는 40%이하이다.

어업종사자의 1인당 생산량은 1980년도에 5,055kg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지만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점점 증가하여 1999년도에는 295만엔이 되었다. 그러나 어업고정자본장비율이 8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여 어업투자 소득율이 1975년도의 102.2%에서 1999년도의 45.9%까지 저하하고 있다. 즉 이것은 고정자본의 투자수준에 걸맞은 어업소득의 증가가 실현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어협의 저금 증가는 어업외 소득의 증가가, 어협의 대출금 감소는 어업투자 소득율의 감소가 원인이며 전체적으로 어협의 저대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표 5〉 어가 경제의 상황

	단 위	70.3	75.3	80.3	85.3	90.3	95.3	99.3
動力船集數	集 船	1.0	1.2	1.0	1.1	0.9	0.8	
動力船本數	本 船	2.01	2.29	2.73	2.84	2.74	2.77	2.85
最盛期の 漁業從事者數	人	2.1	1.9	1.9	1.9	1.9	1.8	1.7
投下勞動時間	時 間	2,903	2,511	2,502	2,417	2,246	2,154	2,060
漁業投下固定資本額	千 千	951	1,767	3,510	4,222	4,305	4,759	4,728
漁獲量	kg	9,696	9,423	9,605	9,574	9,673	8,927	8,313
漁業收入	千 千	1,580	3,143	4,696	4,711	5,375	5,198	5,020
漁業所得	千 千	927	1,805	2,437	2,218	2,589	2,366	2,168
기타事業所得	千 千	83	194	216	227	259	366	281
事業外所得	千 千	434	1,182	1,911	2,277	2,856	3,176	3,296
漁家所得	千 千	1,443	3,181	4,564	4,722	5,705	5,908	5,745
租稅公課	千 千	75	198	467	707	944	807	823
可處分所得	千 千	1,368	2,984	4,906	4,015	4,760	5,100	4,922
家計費	千 千	1,022	2,000	3,115	3,520	3,821	4,078	4,134
經濟잉여	千 千	346	984	982	495	939	1,023	788
어업의존도	%	64.2	56.7	53.4	47.0	45.4	40.0	37.7
어업고정자본장비율	千 千	453	930	1,847	2,222	2,266	2,644	2,781
어업투하 소득율	%	97.4	102.2	69.4	52.5	60.1	49.7	45.9
종사자1인당생산량	kg	4,617	4,959	5,055	5,039	5,091	4,959	4,890
종사자1인당생산액	千 千	752	1,654	2,471	2,479	2,829	2,888	2,953

자료 : 어업경제 조사보고(魚家의部)

주 : 1. 어업의존도 = 漁業所得/會杯所得 × 100

2. 어업고정자본장비율 = 漁業投下固定資産額/最盛期の 漁業從事者數

3. 어업투하 소득율 = 漁業所得/漁業投下固定資本額 × 100

3. 신어련

신어련은 어협의 상부 금융기관이다. 현재 신어련은 전국에 35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신어련이 없는 縣(이는 어협의 수가 적기 때문임)의 어협은 농림증급의 지점(사업소)과 직접거래를 하는 등 변칙 3단계의 경우도 있다. 어협의 신용사업이 경제사업 등과 겸업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신어련은 신용사업만을 실시하고 있다.

신어련은 회원인 어협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들여 자금이 필요한 어협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등 縣 단계에서의 자금의 조정과 어협의 용자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신어련도 어협의 신용사업과 같이 비조합원의 이용에 제한이 있다. 비조합원 이용의 제한에 대해서는 통상 회원의 이용분량의 20%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신어련 자금의 안정적·효과적 운용을 확보하고 어협 경영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신어련에 대해서는 저금 및 정기적금의 합계액의 10%이내의 비조합원 대출이 인정되고 있다.

신어련은 이들 저금·대출업무와 함께 회원을 위한 어음의 할인·채무보증·국내어음거래를 실시하는 외에 농림공고·주택금융공고 등의 업무도 대리하고 있다.

또 이들 신용사업에 관계하는 업무에 더해서 縣 단계에서 실무면에서의 사업 추진자로서 縣내의 신용사업에 관한 기획, 저금·대출 등의 추진활동, 신 금융상품의 개발, 어협 사무직원의 연수 등을 실

시하고 있다.

2000년도 말의 신어련의 주요 계정을 개관해 보면 <표 6>과 같다. 자금 총액은 2.7조엔에 달하며, 매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자금의 조달 면에서는 주로 단위 어협으로부터의 저금이 대부분이다. 운용 면에서는 1985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는 대출금이 2000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협이 행하고 있던 신용사업을 신어련에 양도하였기 때문이며, 양도 분을 제외하면 여전히 감소 경향에 있다. 한편 1985년부터는 저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출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부터 저대율이 40%를 하회하고 있다. 저대율 감소는 여유금의 증가를 불러일으켜 여유금의 80%이상(신농련은 70%)을 계통 예치금으로서 운용하고 있다.

단위 어협의 경우에는 저금을 신어련에 예치하며 장려금을 포함한 실질이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채산성이 보장되지만, 신어련의 경우는 여유금을 단순히 농림증금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채산성이 희박해 진다. 이 때문에 여유금의 운용이 증시되어 유가증권(정부보장 채권 및 각종의 社債)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6> 信漁連의 주요 계정

단위 : 억엔, %

		65.3	70.3	75.3	80.3	85.3	90.3	95.3	00.3
調 達	預金(A)	583	1,810	5,014	11,247	15,650	20,430	22,250	23,910
	借入金	48	161	747	386	386	69	253	370
	기타	118	431	566	1,176	1,939	3,235	2,287	2,438
調達 / 運用共通計		749	2,402	6,327	12,809	17,975	23,734	24,790	26,718
運 用	出資金(B)	449	1,330	4,220	7,435	8,396	7,777	7,379	8,663
	余裕金(C)	218	732	1,812	4,674	8,309	13,450	15,593	16,314
	系統預置金(D)	185	572	1,447	3,875	7,189	10,555	12,851	13,283
	系統外預置金	32	137	265	557	662	805	653	894
	유가증권	1	23	100	242	458	2,090	2,089	2,137
	기타	82	340	295	700	1,270	2,507	1,818	1,741
預貸率(B)/(A)		77.0	73.5	84.2	66.1	53.6	38.1	33.2	36.2
系統利用率(D)/(C)		84.9	78.1	79.9	82.9	86.5	78.5	82.4	81.4

자료 : 農林中金「信漁連殘高試算表」

<표 7>에서는 신어련의 저금⁴⁾과 대출금을 조합원과 비 조합원 별로 나타내고 있다. 2000년의 저금과 대출금에 접하는 비 조합원의 비율이 각각 25.6% 17.7%로, 최근 들어 비 조합원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4. 농림증금

농림증금은 농림어업자가 조직한 농협, 어협, 산림조합 및 이들의 연합회 등이 출자해서 만든 전국 금융기관이고 그 조직은 협동조합 조직체이다. 또 농림증금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건전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농림수산전문 금융기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

4) 표7의 분류에서는 조합원내의 어협에 이어 제 2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37원의 조합원이다. 이것은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협내에서 어협의 요청에 기초하여 신어련이 직접 조합원으로부터 취급하고 있는 저금이 다. 그것이 199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협의 신용사업의 신어련으로의 양도에 의한 것이다.

수산경영론집

<표 7> 信漁連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貯金 과 貸出金の 동향

단위 : 억엔, %

		70.3	75.3	80.3	85.3	90.3	95.3	00.3
貯金	總 額	1,810	5,014	11,247	15,650	20,430	22,219	23,910
	조합원	1,647	4,520	10,048	13,657	17,835	18,225	17,798
	漁 協	1,545	4,290	9,597	13,007	17,029	16,250	18,038
	漁業生産組合	3	7	11	8	12	8	21
	縣 漁 連	49	94	157	243	336	207	248
	會員組合員	44	111	228	296	324	1,630	4,352
	준 조합원	6	18	55	103	134	130	139
	비 조합원	162	493	1,198	1,993	2,594	3,994	6,112
	信用基金協會	42	114	270	328	389	454	439
	기 타	120	379	928	1665	2205	3540	5673
總 額	1,330	4,220	7,435	8,396	7,777	7,379	8,663	
貸出	1,288	4,056	7,109	8,177	7,535	6,809	6,998	
漁 協	1,021	3,374	5,776	6,798	6,316	4,903	4,500	
漁業生産組合	20	35	56	56	47	52	47	
縣 漁 連	138	280	529	534	356	302	191	
會員組合員	109	367	748	789	744	1,469	2,260	
준 조합원	24	51	42	56	0	1	134	
비 조합원	18	113	284	163	242	569	1,531	
비조합 預 金	9.0	9.8	10.7	12.7	12.7	18.0	25.6	
원비율 貸出 金	1.4	2.7	3.8	1.9	3.1	7.7	17.7	

자료 : 農林中金 「信漁連殘高試算表」

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위협동조합, 신용사업연합회 자금의 지역적, 계절적인 편재를 없애는 것, 계통 단체로부터 예치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그것에 의해 얻어진 이익을 계통단체에 환원하는 것에 있다.

농림증금의 업무의 개요는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금의 조달은 농협, 어협 등의 창구에서 모이는 계통예치금을 중심으로 하는 예금과 일반개인법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농림채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은 5년 기한의 「利付농림채권」과 1년 기한의 「할인농림채권」의 두 종류가 있다. 이상의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해 조달된 자금량은 2000년 3월까지 49억 7,555억엔에 달하고, 이는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가운데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된 자금의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계통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의 가공·유통을 실시하는 농림수산 관련산업에의 대출,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농산어촌의 산업기반과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의 대출, 공사·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출하고 있다. 이상의 대출 외에 유가증권 운용, 콜-론(call-loan)⁵⁾등을 통해 금융시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5) 금융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극히 단기의 資金貸借이 이루어지는 콜-시장(call market)에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도시은행)이 자금이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예를 들어 농림증금)으로부터 차입하는데 차입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콜-론이라 부른다.

일본의 수산금융 시스템에 관한 연구

또한 쌀·보리의 정부수매대금 등을 농가에 지불하거나 농림공고의 위탁을 받아 농림어업을 위한 재정자금에 대출하고 있는 외에, 계통단체의 신용사업을 대표해서 외국환어음, 국채 등의 창구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표 8> 農林中金の 주요 계정

단위 : 억엔

	65.3	70.3	75.3	80.3	85.3	90.3	95.3	00.3
調 達								
預 金	5,907	14,516	28,814	84,935	156,323	213,265	300,624	333,799
農林債券	2,054	4,647	10,531	20,610	36,865	62,202	91,841	69,780
貸出金과 기타	1,368	1,611	3,818	12,589	23,578	78,105	53,372	93,976
調達/運用共通計	9,329	20,774	43,163	118,134	216,766	353,572	445,837	497,555
運 用								
貸 出 金	7,352	14,743	31,078	57,980	90,418	118,458	158,153	213,831
유가증권	703	4,954	7,376	48,627	81,886	125,689	134,733	148,709
預 置 金	95	146	648	813	3,434	37,537	97,459	60,655
買入手形, 콜론기	-	-	800	1,094	22,478	32,016	29,624	27,225
기 타	1,179	931	3,261	9,620	18,550	39,872	25,868	47,135

자료 : 農林中金資料

주 : 1. 98년 3월말, 자본금이 2750억엔에서 1조1250억엔으로 증가 함.

2. 콜론은 85년까지 貸出金勘定에 포함되어 있음.

3. 85년 까지의 수치는 해외지점계정을 포함한 수치이다.

농림증금의 2000년도 말의 주요 계정에 대해서 개관하면 <표 8>과 같다. 총 자금량은 약 49조 8천 만엔에 달하고 매년 순조로운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조달 면에서는 예금이 2000년도말 잔고에서 67%로 매년 증가경향에 있다. 1990년대까지 예금, 채권, 출자금·기타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신장을 보였지만 1995년부터는 농림채권이 증가에서 감소로, 출자금·기타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출자금이 증가한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우선출자제도의 도입에 의한 우선출자금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운용면에서는 대출금이 매년 증가 경향에 있고 2000년도 말에는 21조엔으로 총자금량의 약 43%를 점한다.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매년 저하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구매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유가 증권, 예탁금, 매입어음, 콜론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기타」부분에서의 운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유화, 국제화의 진전에 의한 장 단기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규제완화의 가운데서 장기 채권 금리의 변동이라는 환경에 대응해서 운용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도 말의 농림증금의 해외 지점을 제외한 총 예금 잔고는 약 35조 7천억엔에 달하고 이는 총 자금량의 67%를 점한다. 예금의 내역을 보면(<표 9>참조), 전체의 약 90%가 농업단체로부터의 예금이다. 이것은 농협단체에서 저축의 증가, 대출정체에 의한 계통예치금의 증가와 더불어 신용사업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신농련)에 있어서도 장기적 금리의 저하, 동시장의 불안 등으로부터 계통예치금의 비율을 비교적 고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 출자 단체로부터의 예금(대부분이 관련 산업 대출처의 예금)은 1995년부터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출 면에서는 2000년 3월말 대출잔고가 약 21조엔이고, 1999년 9월말부터 20조엔을 넘어서고 있지만 계통대출이 농림어업의 부진, 계통단체의 자금수요의 감소를 반영하여 1985년도부터는 감소

수산경영론집

<표 9> 農林中央金庫의 단체별 預金·貸出金殘高의 추이

단위 : 억엔

	65.3	70.3	75.3	80.3	85.3	90.3	95.3	00.3
團體別預金殘高	5,908	14,516	29,813	84,936	155,860	209,212	293,981	327,089
農業團體	5,186	12,362	21,017	68,717	131,713	166,859	266,307	290,898
水産團體	203	609	1,527	4,075	6,436	7,256	11,697	11,995
森林團體	3	6	10	33	33	31	42	48
기타 出資 團體	5	8	24	34	41	62	65	97
出資 團體計	5,397	12,985	22,578	72,859	138,223	174,208	278,111	303,038
非 出資 團體	511	1,531	6,235	12,077	17,637	35,006	15,870	24,051
團體別貸出金殘高	7,352	14,742	31,078	57,980	90,221	118,201	154,336	209,223
農業團體	775	2,467	9,433	7,867	8,044	9,494	8,681	6,001
水産團體	930	1,601	3,345	3,717	3,862	2,357	2,075	1,877
森林團體	134	492	911	1,309	1,482	1,271	1,117	506
기타 出資 團體	32	39	58	71	181	136	137	102
기타 系統 團體	-	-	1,692	3,118	9,202	6,818	6,421	5,863
系統 團體系	1,871	4,599	15,439	16,082	22,771	20,076	18,431	14,349
關聯産業			14,701	29,679	48,661	69,536	88,816	66,390
金融機關	5,481	10,143	118	5,889	3,636	4,065	42,829	8,911
기타			820	6,330	15,153	24,524	15,260	119,573
非 系統 團體計	5,481	10,143	15,639	41,898	67,450	98,125	135,905	194,874

자료 : 농림중금 자료

주 : 해외지점을 제외한 수치이다.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련산업으로의 대출은 1995년도까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중금의 관련산업 대출은 크게 ① 생산자재의 공급에 관련하는 산업(비료, 농업기계, 농업용 비닐, 사료, 어선, 연유, 어구 등의 제조나 판매를 행하는 법인), ②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관련하는 산업(유제품, 주류, 통조림류, 냉동식품, 목제품, 종이, 펄프 등 농림수산물의 가공을 행하는 법인이나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사, 백화점, 슈퍼마켓 등 농림수산의 유통을 행하는 법인), ③ 생산기반의 정비와 관련되는 산업(농림어업관련 토목), ④ 계통단체의 시설에 관련하는 산업, ⑤ 농림어업자의 생활에 관련하는 산업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대출은 전술한 기업의 발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계통단체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며, 아울러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대출조건 등은 일반은행과 특히 다른 점은 없다. 또한 이런 대출은 2000년도 말까지 6조 6,390억엔(농림중금의 총 대출잔고의 31.7%에 해당)에 달하고 있다. 계통, 관련산업 이외의 중요한 대출처로서는 농산어촌정비법인, 특별대출법인, 주택금융회사가 있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로의 대출은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IV. 제도금융

1. 제도금융의 개요

1) 제도금융의 체계와 용자상황

수산제도금융에는 정부나 縣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과 계통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으로 크게 나뉜다. 전자는 농림어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공고, 일본개발은행 등 소위 정부금융기관 자금과, 縣이 출자하는 연안어업개선자금 등이 있다. 후자는 재원으로 되어있는 민간자금에 대하여 정부 등이 이자보전 등을 행하는 것으로 어업근대화자금이 대표적이다.

먼저 농림공고자금(수산관계)은 ① 어항자금 등 생산기반의 정비에 필요한 자금, ② 연안어업구조개선 사업추진 자금, ③ 어업경영 재건정비 자금 등 경영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 ④ 기타 어선자금, ⑤ 개인, 공동이용의 시설자금, ⑥ 수산가공자금, ⑦ 연안어업경영안정 자금 등의 용자가 행해지고 있다. 연안어업개선자금은 1979년에 창설되어 연안어업종사자 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연안어업의 경영, 조업상태, 어가 생활의 개선, 어업후계자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都道府縣이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업근대화자금은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에 의해 1979년 창설되어 어업자들의 자금장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어업경영의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어선, 어구, 기타 개인 및 공동이용시설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이 용자되고 있다. 그 외 태풍 등 재해에 대해서 용자되는 天災자금, 각종의 경영안정자금(긴급용자자금)이 있다. 예를 들면 「어업경영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고정채권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경영유지안정자금(1976년에 창설), 「감선, 창설의 합리화 등에 참가하는 어업자를 위한 과거 부채의 정리」를 위한 어업구조재편정비자금(1982년 창설, 1994년 이후 폐지), 어업구조 재편정비 자금을 대신하여 「어업자 스스로가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참가 등 미래를 향한 구조개편을 촉진하고, 소기의 목적달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인 어업경영고도화촉진지원자금(1998년에 창설), 「경영이 매우 곤란한 거업자에 관계기관의 지원, 협력에 의한 경영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개선자금(1986년에 창설), 「諸외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의 설정, 어업조약의 규제강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영체」에 대한 국제규제관련경영안정자금(1978년 창설), 「어업용 연료의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업용연료대책특별자금(1976년에 창설, 1986년도 이후에 폐지) 등이 있다.

<표 10>에 의한 이상의 수산관계 제도자금의 용자 상황은 99년도 950억엔 (일부의 자금은 제외)의 용자액 가운데 농림공고자금과 어업근대화자금이 전체의 77%를 점하고 있다. 1965년부터의 추이를 보면 1980년도까지는 2,472억엔 까지 증가했지만 그 후는 일본의 어업 부진과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수산경영론집

<표 10> 制度資金의 融資狀況 (資付決定額)

단위 : 백만원

		65.3	70.3	75.3	80.3	85.3	90.3	95.3	99.3
財政 關係 資金	農林公庫資金 (53年創設)	7,650	29,147	58,018	111,446	66,834	87,609	35,471	21,974
	沿岸漁業改善資金				3,639	4,715	4,886	4,970	3,603
	오키나와沿岸漁業振興特別資金			1,714	3,394	1,529	764	870	187
	計	7,650	29,147	59,732	118,479	73,078	93,259	41,311	25,764
系統 資金 等 原資 資金	漁業近代化資金		24,239	68,730	88,878	68,710	76,925	61,502	51,303
	天災資金	55年創設		2,376	1,495	2,258	1,145	?	?
	經營安全資金 (??融資資金)				19,182	22,066	7,161	5,258	3,620
	漁業經營維持安全資金				19,182	9,670	3,074	3,451	1,153
	漁業經營高度化?進支授資金					10,605	1,049	942	1,936
	漁業經營再建資金						3,038	865	0
	國際規制關聯經營安全資金				0	1,791	0	0	531
	水産加工經營改善?進資金						887	1,918	1,249
	漁業經營改善?進資金						951,211	4,879	9,467
計		24,239	71,106	128,737	115,100	93,279	78,815	69,259	
制度資金合計		7,650	53,386	130,838	247,216	188,178	186,538	120,126	95,023

자료 : 水産廳조사

주 : 漁業經營度化促進支授資金 (98年創設)는 舊漁業構造再編整備 (82年創設)로 명칭이 변경 되었음.

2) 제도금융의 기능과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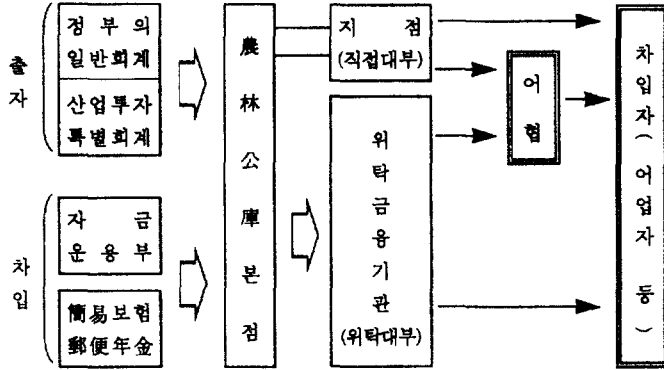
제도금융은 법률, 정령, 규칙, 조례 등에 준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결국 정책적 유도가 제도금융의 첫 번째 역할 (정책적 유도 기능) 이지만 이것을 지탱하는 제도금융의 그 외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수산업의 기술적인 특질 등에 유래하는 리스크를 보완한다. (리스크 보완 기능)
- ② 경영의 취약성 등으로부터 오는 신용력의 결여를 보완한다. (신용력 보완 기능)
- ③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의해 그 수익을 보완한다. (수익 보완 기능)
- ④ 회수 기간이 장기에 걸친 사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한다. (기간 보완 기능)
- ⑤ 단기적 자금의 수요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양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보완한다. (양적안정 보완 기능)

그리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정부, 현, 공단 등에 의한 직접적인 사업, 보조금 지불, 세제 혜택 등이 있지만, 제도 금융은 이러한 수단과 비교하여 보면 정부의 개입이 적고 수산관계자의 독자성이나 창조적 기능을 개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시대의 새로운 요청에 따라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도자금의 차입이 실현되면 그 차입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지만, 제도 자금은 다른 자금과 달리 차입 후에도 약간의 규제가 따른다. 그 중요한 점으로써는 ① 자금은 계획적으로 예정한 것에만 사용할 것, ② 자금의 지출용도를 명확히 해 둘 것, ③ 경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④ 재해 사고 등으로 경영에 지장이 생겼거나, 경영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자 창구에 연락할 것 등이 있다.

2. 농림어업금융공고



<그림 4> 농림어업금융공고의 구조

농림공고는 농림어업금융공고법(1952년 법률 제 355호)을 기본으로 하여 1953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당 공고는 농림어업의 생산력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장기 저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하나이다. 농림공고에 의해 융자된 자금은 농림어업의 경영 구조 개선이나 생산기반의 정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정책성이 높은 것이다. 자금 종류는 정책 목적에 따라 현재 27 종류가 만들어져 있다.

용자잔고는 2000년 3월 말 현재에 4조엔에 달하고 그 내역은 농업관계 2.4조엔(60%), 임업관계 1조엔(25%), 어업관계 0.2조엔(5%), 그 외 기타 0.5조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도의 용자액은 4,152억엔이다. 이러한 용자를 행하기 위한 원자금은 주로 재투자금(자금융부 자금등)의 차입금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다. 또 저리자금의 용자에 의해 공고의 수지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은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의 보급금에 의해 보조되고 있다. 농림공고는 현재 본점(동경)과 22개의 지점을 배치하여 용자 업무를 행하는 것 이외에 상당부분의 업무를 농림중금, 신농련, 신어련, 지방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 284개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고 본지점에 의한 대출을 직접 대출, 위탁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을 위탁대출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탁 금융기관인 신농(어)련이 직접 개별 농어가에 대출하지 않고 일단 단협에 대출하여 농(어)협이 농어가에 대출하는 것으로 소위 轉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그림 4>참조).

<표 11>의 수산관계 농림공고 자금의 대출 결정액은 1999년도 3월 말 현재 약 220억엔이고 그 내역은 연안어업 구조개선 사업추진, 어업경영 재건정비, 조건불리지역 활성화, 진흥산촌·過疎지역경영개선을 목적으로한 경영구조개선자금이 약 39억엔(17.5%), 어항 및 어장 정비에 관한 어업기반정비자금이 28억엔(12.7%), 어선, 어업시설, 수산가공시설에 관한 일반시설자금이 136억엔(62.0%), 연안어업경영안정자금이 17억엔(7.7%)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시계열로 보면 전체의 대출 결정액은 1980년도의 1.1조엔에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자금 종류별로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어선(원양 가다랭이 어업, 원양 마구로 어업, 선망어업,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업)과 어업시설을 포함하는 일반시설자금이 주류이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와 1977년의 200해리 시행에 동반한 감선수금이 크게 증가하여, 1985년에 1.1조엔까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일반설비 자금과 감선수금이 줄어들고, 어장과 어항정비자금이 일정비율을 점하게 되

는데, 최근에는 재차 일반설비자금이 주류로 되고 있다.

<표 11> 農林公庫의 資金種類別貸付決定額의 추이 (水産관계)

단위: 백만원

	70.3	75.3	80.3	85.3	90.3	95.3	99.3
經營構造改善	15,170	29,603	72,966	48,278	55,427	3,948	3,854
漁業基盤整備	616	3,342	6,142	5,734	10,352	3,367	2,795
漁港	616	3,342	3,597	3,461	4,497	954	883
漁場整備	-	-	2,545	2,273	5,855	2,413	1,912
一般施設	13,327	23,532	27,827	11,449	20,034	27,977	13,623
漁船	12,529	18,226	14,254	5,548	5,125	12,035	5,405
漁業施設	798	5,277	8,390	4,770	5,006	3,318	2,406
水産加工	-	-	5,183	1,131	9,903	12,624	5,812
經營維持安定	34	1,571	4,511	1,373	1,796	125	1,702
沿岸漁業經營安定							
合 計	29,147	58,018	111,446	66,834	87,609	35,417	21,974

자료: 農林漁業金融公庫「業務統計年報」

<표 12> 農林公庫資金의 取扱金融機關別付決定額의 추이

단위: 백만원

	70.3	75.3	80.3	85.3	90.3	95.3	99.3
農林中金	3,546	4,360	14,105	9,835	10,722	2,110	798
銀行	3,683	6,222	4,240	3,090	3,162	310	1,796
第二地銀, 信金	434	778	1,554	220	1,104	139	564
信農連	1,077	14,363	27,802	17,843	16,569	5,632	3,570
農林公庫	4,405	31,544	63,533	35,685	56,014	26,038	14,069
合 計	13,145	58,019	111,446	66,835	87,608	34,297	20,807

자료: 農林漁業金融公庫「業務統計年報」

<표 12>는 농림공고 자금의 취급금융기관 별 대출 결정액을 나타낸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농림공고는 농림증금, 신어련,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출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용자를 실시하고 있다. 1999년도의 대출에 대해서 취급금융기관별 대출 결정액을 보면 농림공고 직접대출이 전체의 6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어련이 26.6%를 점하고 있다.

3. 어업근대화자금

어업근대화자금은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1969년 법률 제 52호)에 의거하여 1969년에 설립된 자금으로 어업자의 자금장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어업경영의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업구조의 개선·근대화는 1960년대부터 큰 과제였지만, 어협의 신용사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자금량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어협이 저축증강운동을 전개해 자금량의 확대를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비용면에서의 대응도 곤란한 상태였다. 이리하여 정부 및 都道府縣은 어선의 대형화·장비의 근대화와 양식장의 확대 등의 자금수요에 대하여 어업계통 금융기관에게 이자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장기·저리의 용자체제인 근대화 자금 체제를 설립하였다.

이 용자체제는 ① 都道府縣이 어업자 등의 용자기관에 대해 이자보전을 행하고 그 경비의 1/2를 정

부가 보조하는 경우, ② 어협, 신어선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농림중금이 융자하고 정부가 직접 이자보전을 행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융자기관은 ① 대출업무를 행하는 어협 및 수산가공협, ② 신용사업을 행하는 어협 및 수산가공련, ③ 농림중금이 있다.

융자의 대상자금은 어선의 개조·건조 또는 취득 외에 어구, 양식시설, 수산물 처리시설, 수산물 냉동시설, 수산물 가공시설, 그 외 시설의 개량 또는 취득, 성육기간이 통상 1년이상인 수산동식물의 종묘 구입 및 육성, 어협 등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및 어촌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 특정의 어가주택자금(1998년에 추가) 등에 요하는 자금 등이 차지한다. 이 중 어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 톤수 70톤 미만의 어선이 대상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대신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총 톤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정해지는 총 톤수의 범위까지가 대상이 된다.

또한 본 자금의 융자를 받을 때에 어업신용기금 협회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어업자는 빌리기 쉽고, 융자기관은 빌려주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표 13〉 漁業近代化資金의 資金種類別貸付実績

단위 : 백만엔

	70	75	80	85	90	95	99
都道府縣	24,087	68,730	88,672	68,548	78,316	61,502	51,312
漁船	14,965	44,832	52,919	37,549	39,835	30,734	26,354
기타個人施設	5,427	18,305	30,001	27,554	33,631	28,402	23,415
共同利用施設	3,695	5,593	5,656	3,445	4,850	2,366	1,543
정부(共同利用施設)	152	-	206	162	1,369	-	-
合計(A)	24,239	68,730	88,878	68,710	79,685	61,502	51,312
融資실정액(B)	25,000	8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A)/(B)(%)	97.0	80.9	71.1	55.0	63.7	49.2	41.0

자료 : 農林漁業金融公庫「業務統計年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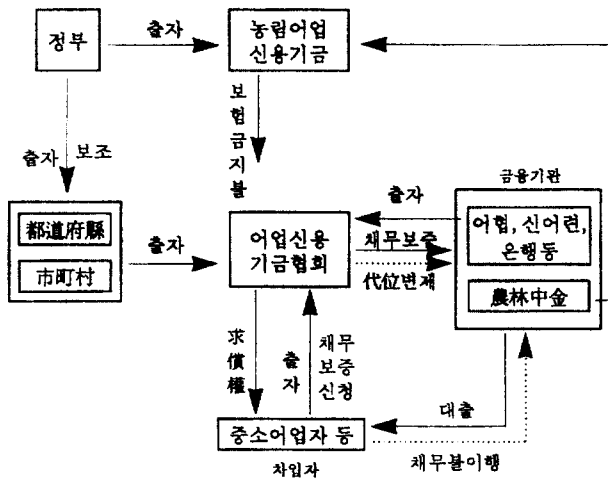
〈표 13〉은 어업근대화 자금의 자금 종류별 대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의 융자계획액은 1,250억엔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융자실적은 513억엔으로 융자 계획액 대비 실적은 41%에 머물고 그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해리 체제의 이행에 따라 연안어업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연안어업 경영체의 어선건조 감소로 인한 설비자금 수요의 감소는 전술한 연안어업생산성의 악화를 입증하는 것으로, 금후도 근대화자금의 수요증가는 크게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어선자금(주로 20톤 미만)이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 개인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융자 실적은 감소경향에 있으나, 양식용 시설자금은 증가 하고 있다.

V. 수산금융관련 보완조치 제도

1. 중소 어업융자 보증보험 제도

이 제도는 중소 어업융자보증법에 의해 1952년에 창립된 것으로 금융기관의 중소어업자에 대한



<그림 5> 중소기업금융보증보험제도의 구조

대출 등에 대해 「어업신용기금협회」가 채무보증하고, 중앙어업신용기금(현농림어업신용기금)이 그 보증에 대해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 구조는 ① 먼저 중소기업자 등의 관계자가 어협 등 용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채무에 대해 어업신용기금협회라는 공익법인이 보증을 한다. ② 그리고 만일 도산폐업 등의 사정에 의해 자금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협회가 중소기업자 등을 대신하여 변제(대위변제)를 한다. ③ 이에 따라 협회는 중소기업자 등으로부터 상

환을 요구하는 권리(구상권)를 취득하게 되어 구상권 채무에 대해서는 협회에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④ 또 협회는 보증채무에 대해 전국기관인 중앙어업신용기금의 보험(보증채무에 대해서 70% 또는 80%)에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의해 협회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구조이다(<그림 5>참조).

협회의 보증조건 등은 대략 아래와 같다. 즉 채무보증을 받기 위한 수속은 용자창구에서 차입수속과 병행해서 실시한다.

- (1) 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되는 중소기업자 등 및 회원인 어협의 조합원이다. 그러나 어업근대화 자금의 대출대상자의 범위의 확대에 동반하여 기금 협회의 보증대상자인 수산가공업용을 운영하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산진흥공익법인, 협동회사 및 임의단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2) 채무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금은, ① 어업근대화자금, ② 정부의 각종 제도자금, ③ 농림공고자금 가운데 어협轉貸자금, ④ 중소기업자 등의 사업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 (3) 채무보증의 범위는 차입금에 이자 및 연대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 (4) 채무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자 등이 협회에 대해 지불하는 보증료는 협회별로 다르지만 차입금의 연 0.25~1.10%이다.
- (5) 한 회원당 채무보증을 받는 최고한도는 회원별로 다르지만 그 회원이 협회에 대출한 금액의 15~50배가 된다.

<표 14>의 중소기업용자보증사업의 동향을 보면, 보증액은 1980년도의 2,291억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1998년도에는 1,570억엔 이었다. 이것을 자금 종류별로 볼 때 어업근대화 자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일반자금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1998년도에는 각각 22.9%, 77.1%를 점하고 있다. 한편 보증잔고는 50% 이상을 어업근대화 자금이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代位辨濟額은 전체의 보증잔고의 감소와 같이 감소하고 있지만 代位辨濟에 의한 求償權 잔고는 매년 증가하여 1995년부터는 1천억엔을

상회한다. 금후의 求償權 잔고 미해소에 대해서는 회수능력에 의해 회수금을 증가시켜 금후의 노력에 의해 求償權 잔고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표 14> 中小漁業融資保證事業의 動向

단위: 억엔

		70.3	75.3	80.3	85.3	90.3	95.3	99.3
보 중 액	漁業近代化資金	76	354	469	369	481	419	360
	一般資金	-	-	1,822	1,374	935	1,282	1,210
	(緊急融資資金)	-	-	447	297	20	23	25
	計	544	1,384	2,291	1,743	1,416	1,701	1,570
보 중 잔 고	漁業近代化資金	95	468	1,628	1,368	1,537	1,614	1,488
	一般資金	460	916	2,813	2,640	1,466	1,179	1,197
	(緊急融資資金)	0	0	1,567	1,618	562	25	178
	計	555	1,384	4,441	4,008	3,002	2,793	2,685
代 位 弁 済	漁業近代化資金	-	-	3	16	14	4	7
	一般資金	9	11	38	95	85	24	22
	(緊急融資資金)	-	-	15	62	99	6	5
	計	9	11	41	111	99	29	28
	求償權殘高			131	534	890	1,021	1,000

자료: 漁業信用基金中央會 「漁業信用基金協會의 保證狀況等」

<표 15>와 같이 보증액을 금융기관별로 볼 때 90% 이상이 계통금융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제도는 실질 상 계통금융을 유지하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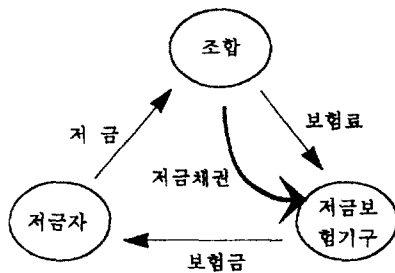
<표 15> 中小漁業融資保證의 금융기관별 보증상황

단위: 억엔

	70.3	75.3	80.3	85.3	90.3	95.3	99.3
漁協	38	166	638	548	557	766	627
信漁連	209	558	830	662	450	472	547
農林中金	190	486	644	349	294	390	236
기 타	108	175	239	183	116	72	55
合 計	544	1,384	2,351	1,742	1,416	1,701	1,466

자료: 漁業信用基金中央會 「漁業信用基金協會의 保證狀況等」

2.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제도



<그림 6> 저금보험의 구조

1973년의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법」에 의거해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기구가 설치되었다. 어협 등이 경영파탄으로 저금의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 저금자 한사람에 대해 1천만엔을 한도로 저금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어협 저금이 저금보험이라는 형태로 보호되어 있어 저금자에 대해 신용력을 고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1년에 창설된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의 농어협판이다(<그림 6>참조).

저축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농협, 어협, 수산가공협, 특정 어협연합회는 강제가입으로 기구에 대해

여 6월말의 저금, 적립금의 합계잔고의 0.012%(1998년 현재)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가진다.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농협, 어협, 수산가공협이 해산·파산 등의 사태에 처할 경우 기구가 저금자에 대해 1,000만엔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 ② 보험금의 지불에 더해 기구가 저금자가 가지고 있는 저금자의 채권 중 보험금 지불 대상이외의 부분(저금의 이자 및 1,000만엔이 넘는 원금)을 매취하는 것, ③ 구제조합 및 연합회 등(신어련, 신농련, 농림증금)에 대해 기구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금원조(금전 증여, 대출, 예입, 자산의 매취, 채무보증, 채권인수)를 행하고, 그 외에도 상호원조제도에 의거한 자산매취에 대한 지원과 후순위채권 공여가 있다. 1998년 6월 현재의 저금보험제도의 발동실적은 금전증여방식으로 8개 농협과 2개 어협이 있다.

3. 전국어협신용사업상호원조제도

· 전술한 공적인 저금보험제도 외에 어협(수산가공협)의 신용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적인 상호원조체제를 확립해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저금지불준비금의 확보와 재건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의해 어협의 경영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협신용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72년에 어협, 신어련, 전어련 및 농림증금 등에 의해 사단법인 전국어협신용사업상호원조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제도는 전국의 조합이 자주적으로 상호부조의 이념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저금보험제도와 상호보완 작용을 하며, 어협저금의 신용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어협은 저금의 연간 평균잔고의 30%(일부예외가 있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어련에 상호원조자금으로서 적립, 신어련은 일정의 비율을 농림증금에 적립하고 있다. 지원의 내용에는 이들 자금을 채원으로 하여 채무초과 어협 및 신어련에 대한 재무안정화지원과 저금지불사고 등의 위기에 직면한 어협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재건에 관한 지원(긴급대출, 정비대출금)이 있다.

최근 금융자유화와 합병의 진전에 동반하여 리스크 증가, 자기책임경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금융행정의 동향의 변화에 따라 이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VI. 결 론

이상과 같이 일본의 수산금융은 어협→신어련→농림증금이라는 어협계통금융과 일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공고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금융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 이들의 금융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중소어업융자보증보험제도,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제도, 전국어협신용사업상호원조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어협계통금융조직은 각각 금융주체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 계통조직은 저금과 대출의 사이에 「중간조직」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고 어협의 이익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기·소규모의 저금을 장기·대규모대출로 전환시킨다는 점

과 신용 리스크를 각 단계별로 분산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한편 단점인 상대적 고금리는 정책적인 이자보전의 확대를 통해 수정하고 있는 점도 일본의 수산금융의 큰 특징이다.

이 어협계통금융과 제도금융은 상호간에 역할 분담에 의해 성립된다. 구체적으로 제도자금은 계통자금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대규모·공적 자금, 저금리(이자보전), 장기 대출이라는 양적·질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그 일정의 기능을 달성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산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내외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① 어업생산의 감소, 어업취업자의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어업관련자금 수요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분야의 대출금이 정체하고 있다. ② 또 1962년부터 시작된 「어협저금운동」이 최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1999년부터 어협저금이 어가경영의 악화,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격화에 의해 신장율이 둔화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금융자유화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1993년의 수협법의 개정에서는 어협·신어련에 대해 대규모신용의 규제, 자기자본비율 및 디스클로저(회사내용공시제도)의 의무화가 적용되는 등 어협신용사업 경영의 건정성의 확보와 자기책임경영이 한층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 하에서 규모가 작고 체제가 미비한 어협은 금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협과 신어련을 일체화하고 신용사업기능을 신어련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어련의 결산상황을 보면 사업규모·이익규모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계통 3단계 조직의 頂點에 있는 농림중금은 계통단체의 대출금 감소로 인한 농림중금으로의 예치금증가에 의해 총 자본금이 50조엔 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중금은 통상의 은행과 비교하여 세제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융자대상은 대출금의 감소에 제동을 걸 수 없는 농림수산업에 관련하는 기업에 한정되고 있다. 이 대책안으로서 농림중금은 정보기술관련 등의 성장산업으로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대상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후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가 높은 수산금융을 보완해 온 제도금융은 일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이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점으로서 ① 융자조건이 경직적이고, ② 차입신청에서 대출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③ 상환시점이 되면 어협의 보통대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특히 ③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보면 차입자의 사업이 순조롭지 않아 변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협의 보통대출 등을 이용하여 변제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저리자금으로부터 고리자금으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차입어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산금융을 보완하는 제도에 대해서 고찰한다. 먼저 계통금융기관의 중소어업자에 대한 대출 등의 변제불능에 대해 채무보증을 실시하는 중소어업융자보증보험제도는 보증료·보험료의 삭감, 보증보험대상범위·대상자금의 확대 등의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원활한 수산금융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어업·금융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의 재편·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금후의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동반하여 금융기관경영에 한층 자기책임이 요청되는 가운데 개별금융기관의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계통금융기관간의 자주적인 구제제도인 상호원조제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 특히 경영규모 면과 영업지역 등의 시점에서 보면 신용부담 등의 위험분산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은 수산금융업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 家の光協會, 信用事業, 1996.
加藤讓, 農業金融論, 明文書房, 1983.
近藤康男, 農業金融論, 農山漁村文化協會, 1986.
白石鋼, 企業金融論, キンザイ, 1974.
卷島直治外2名, 農協信用事業入門, 全國協同出版株式會社, 1964.
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險機構, 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險機構25年の歩み, 1999.
農林水産金融研究會, 農林水産制度金融の手引き, ぎょうせい, 1999.
_____, 農林水産金融の動向, ぎょうせい, 1988~1999.
農林中央金庫調査部, 農林中央金庫50年の歩み, 1973
_____, 農林金融の實情, 1960~1988.
農林中央金庫, 農林中央金庫75年の歩み, 1998
_____, 漁協系統信用事業中期方策(1997~1999), 1997.
_____, 漁協系統信用事業中期方策(2000~2002), 2000.
漁業信用基金中央會, 中小漁業融資保證制度調査等事業報告書, 1980~1999.
水産廳, 信用漁業協同組合連合會の現況, 1990~1998.
_____, 水産制度資金の概要
全漁連, 漁業協同組合統計表, 1999.
_____, 漁業經營體財務・資金調達構造調査報告書, 1999.
_____, 漁協財務收支構造實態調査報告書, 2000.
_____, 1990~2001年度 漁協の運動方針, 1998.
水産廳, 水産金融法令集Ⅰ, 1985.
小野征一郎, 水産金融論, 「現代水産經濟論」, 北斗書房, 1982.
増田洋, 漁業における財政・金融の構造と機能, 「日本漁業の經濟分析」, 農林統計協會, 1992.
増田洋, 漁業金融の動向,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九州大學出版會, 1988.
加瀬和俊, 漁協の役割と水産金融の動向, 「新海洋時代の漁業」, 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米田一二三, 漁業金融の性格と動向, 「經濟發展と水産業」, 西日本漁業經濟學會編, 1977.

A Study on Fisheries Financial Systems in Japan

Song, Jung-Hun

Abstracts

Fisheries finance is divided into the policy finance of long period of time and low interest and the special financing institutions, such as Fisheries Co-operatives. Union system finance is the system finance, which supports the fisheries system organization. Fisheries Co-operatives in cities, towns and villages are the independent management objects. Prefecture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is in a prefecture stage. Norin Chukin Bank is in a national stage. Each shares functions in these three stages, and finance is performed systematically. Fisheries policy finance comprises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 capital such a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Finance Corporation which is based on the capital of a country or a prefecture financial fund, and Fishery Modernization Capital used as financial funds through the government. Moreover, to complement such finance institutionally, Fisheries Credit Foundations, Agriculture and Fisheries Saving Insurance Corporation and National Fisheries Co-operative Trust Enterprise Mutual Aid system have been established